

대법원 2023도13417
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등 사건

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기자들인 피고인들이 대통령(당시 전 검찰총장) 배우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주택으로 찾아가 그 정원 안까지 들어간 다음, 약 15분 동안 창문이나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등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하고,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위 주택의 거주자에게 전 거주자인 지도교수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위반(공동주거침입)과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오경미)는, **검사의 상고를 기각**하여,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**공무원자격사칭 부분을 유죄로 인정**하고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위반(공동주거침입)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(대법원 2024. 4. 4. 선고 2023도13417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사건의 개관

▣ 배경사실

- 기자들인 피고인들은 2021. 7. 8.경 대통령(당시 전 검찰총장) 배우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를 취재하기 위하여 그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된 주소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음
-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이 확인한 주소지에는 위 지도교수가 거주하고

있지 않았고, 피해자 A(이하 '피해자')가 거주하고 있었음

나. 공소사실의 요지

▣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위반(공동주거침입)

- 피고인들은 위 지도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된 주택에 이르러, 그곳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뒤편의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거나, 목재 데크 위로 올라가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며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

▣ 공무원자격사칭

- 피고인들은 위 주택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앞 유리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, 피해자에게 "경찰입니다.", "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?"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음

2. 소송경과

▣ 제1심 : 공무원자격사칭 부분 유죄,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위반(공동주거침입) 부분 무죄

- 피고인들 : 각 벌금 150만 원
- 피고인들은 공무원자격사칭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
- 제1심의 일부 무죄 판단 이유
 -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위반(공동주거침입) - 무죄 :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'주거'에 해당하지 않고,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함

▣ 원심 :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

-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

- ▣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피고인들이 들어간 장소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'위요지¹⁾'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▣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- ▣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위반(공동주거침입)죄에서의 '위요지',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1) 圍繞地; 건물 등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